

기업통계등록부 이용자 안내서

User Guide for Statistical Business Registers

2025



통계청
Statistics Korea

기업정보가 필요하다면?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를 활용하세요!



목 차 CONTENTS

기업통계등록부 (SBR) 소개

- 1 기업통계등록부란? 4
- 2 작성연혁 5
- 3 포괄범위 6
- 4 작성단위 6
- 5 제공자료 8
- 6 통계단위별 제공항목 9

SBR 항목 이해하기

- 1 명부 12
- 2 기본항목 13
- 3 고유번호 20
- 4 특성항목 21

SBR 이용하기

- 1 이용절차 24
- 2 이용형태 및 제공항목 25
- 3 이용시 참고사항 26
- 4 활용 사례 28

부록

- 1 기업통계등록부 레이아웃 30
- 2 기업통계등록부 구축시 활용자료 37
- 3 기업통계등록부 관련 규정 38
- 4 행정구역분류코드 45
- 5 한국표준산업분류(제 10차) 46
- 6 주요 용어해설 48



2025년 기업통계등록부는 이렇게 개선됩니다.

표준화 항목 제공

- ② 기업통계등록부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 7차 제·개정('24.11)』에 따라 연간, 분기, 월간 SBR 전 시계열의 제공항목을 '표준화 항목'으로 개정하여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용자분들께서는 표준화 전·후 항목 연계표를 참고하시어 분석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항목

- ② 기업통계등록부는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항목을 발굴·추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23년 기준 연간 기업통계등록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항목을 추가 제공합니다.

1. 건강보험 보수총금액

- 기업의 임금구조 변화 등 기업의 고용형태 분석 등을 위해 건강보험 기반의 직장가입자의 보수총금액을 추가 제공합니다.
 - 제공시계열: 2010년 ~
 - 제공항목: 기업 건강보험 보수총금액(단위: 백만원)

※ 건강보험 보수총액

- 보수총액 정의: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보수의 총액
 - ☞ 육아휴직 급여, 식대, 자가운전비, 국외근로소득 등 비과세 항목 제외
- 보수총액 신고: 직전년도 12.31 기준 직장가입자 자격인 모든 근로자, 필수신고
- 신고기간 / 통계청 입수: 매년 3월, 10월 / 익익월말

2. 외국인 종사자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업의 외국인 고용분석 등을 위해 기업단위의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항목을 추가 제공합니다.
 - 제공시계열: 2010년 ~
 - 제공항목: 성별×종사상지위별(상용, 임시 및 일용)



※ 추가 제공항목의 자세한 설명 및 '사용시 유의사항' 등은 제공되는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통계등록부 (SBR) 소개

(SBR, Statistical Business Registers)



기업통계등록부(SBR) 소개

(SBR, Statistical Business Registers)

1 > 기업통계등록부란?

기업통계등록부는 다양한 기관의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연계하여 구축한 기업 및 사업체 단위의 모집단 자료입니다. 통계청은 각종 경제통계 작성을 지원하고자 매월 기업 창·폐업 정보를 활용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종사자, 매출액 등 관련 내용을 수록·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통계등록부는 산업 및 지역별 표본조사 프레임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데이터와의 추가 연계를 통해 다양한 분석 목적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유럽 등 많은 선진국들도 '통계등록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이제 행정자료는 통계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천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업통계등록부 이용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품질 측면의 개선을 위해 산업 및 주소 코드의 표준화 등 여러 단계에 걸쳐 데이터 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활용가능한 원천자료를 발굴·추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와 '통계등록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행정자료(Administrative Data)는 행정 및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식대로 수집하는 자료로,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 및 과세자료, 4대 보험 자료 등이 있음
- 통계등록부(Statistical Register)는 통계 생산을 위해 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계하여 작성한 인구, 가구, 주택, 기업 대상의 모집단 자료임

주요 국가의 기업통계등록부

- (EU)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 경제통계 생산을 위해 기업등록부 구축
- (미국) 국세청 등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센서스 조사 자료를 통해 보완
- (호주) 국세청의 사업자신고자료를 기반으로 구축, 경제통계 작성에 활용
- (영국) 국세청, 기업등록청 등의 행정자료 및 민간자료를 이용하여 구축



통계청은 2017년부터 매년 연간 기업통계등록부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모집단 변화를 보다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기(2019년~)와 월간(2023년~) 기업통계등록부를 추가로 제공 중입니다.



기업통계등록부 주요 연혁

- ('16년) 기업통계등록부 시범 구축
- ('17년) 연간 기업통계등록부 서비스 시작('10년~'15년)
- ('19년) 분기 기업통계등록부 서비스 시작('18년 4분기~'19년 2분기)
- ('20년) '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기업통계등록부 기반 모집단 제공
- ('21년~'22년) 기준연도 대상 전국사업체조사 기업통계등록부 기반 모집단 제공
- ('23년) 월간 기업통계등록부 서비스 시작(7월, '22년 1월~'23년 6월)

<참고> 연간, 분기 및 월간 기업통계등록부 비교

- (연간) 행정자료에 전국사업체조사 등 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명부가 포괄적임(연간: 15개월 시차)
- (분기 및 월간) 행정자료로만 구축하여 상대적으로 시의성이 높음(분기: 4개월, 월간: 1개월 시차)

구분	연간 기업통계등록부	분기 기업통계등록부	월간 기업통계등록부
기준시점	· 기준연도 12월 기준	· 분기말 기준	· 월말 기준
역 할	· 통계단위 모집단 제공	· 통계단위 명부 제공	· 통계단위 명부 제공
구축시기	· 기준연도 익익년 3월	· 매 익분기 익월(4, 7, 10, 12월)	· 매 익월 말
제공시기	· 기준연도 익익년 4월	· 매 익분기 익익월(5, 8, 11, 익년 1월)	· 매 익월 말
주요 작성 항목	명부	· 기업(사업체) 명부 - 행정자료+조사자료	· 기업(사업체) 명부 - 행정자료
	종사자 (유급 종사자)	· (종사자 수) - 기준연도 12월 기준 · (종사상 지위) - 상용, 임시·일용 * 사업체 단위까지 배분	· (종사자 수) - 최근 분기 말월 기준 · (종사상 지위) - 상용, 임시·일용 * 기업 단위 제공 (사업체 배분 안함)
	매출액	· 기업, 사업체 매출액 제공 * 사업체 단위까지 배분	· 기업 매출액 제공 * 최근 연간 SBR 매출액 (사업체 배분 안함)

3

포괄범위

기업통계등록부는 전(全)산업에 걸쳐 공공 및 민간, 영리 및 비영리 기관과 관계없이 행정 자료와 통계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기업을 포괄합니다.

4

작성단위

기업통계등록부는 크게 법·행정단위와 통계단위로 구성되며, 자료 간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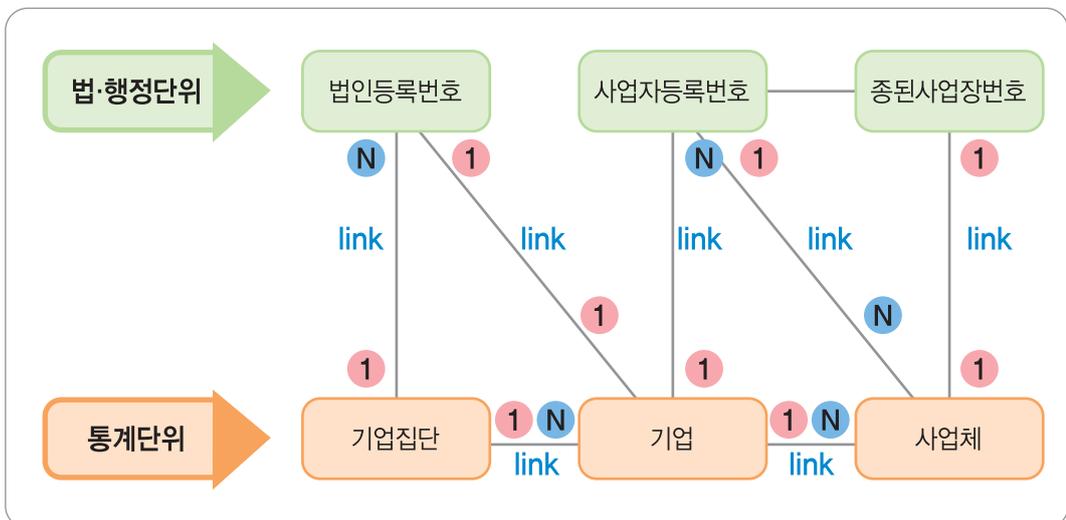
법·행정단위의 유형은 투입되는 행정자료에 따라 법인, 사업자, 사업장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법인’은 상법¹⁾과 민법에 의거하여 생성되며 법원행정처의 법인등기자료로 관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²⁾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로 관리하며, 부가가치세의 과세 단위이기도 한 ‘사업장’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기관과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 1)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통계청은 국제사회 상호 비교성 제고 등을 위해 유럽지역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 가이드 라인을 참고하여 통계단위 유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UNECE Guide lines on Statistical Business Register(2015),
Eurostat Business Registers Recommendations Manual(2010)

법 행정단위와 통계단위 연계 관계



4.1. 법·행정단위와 기업집단,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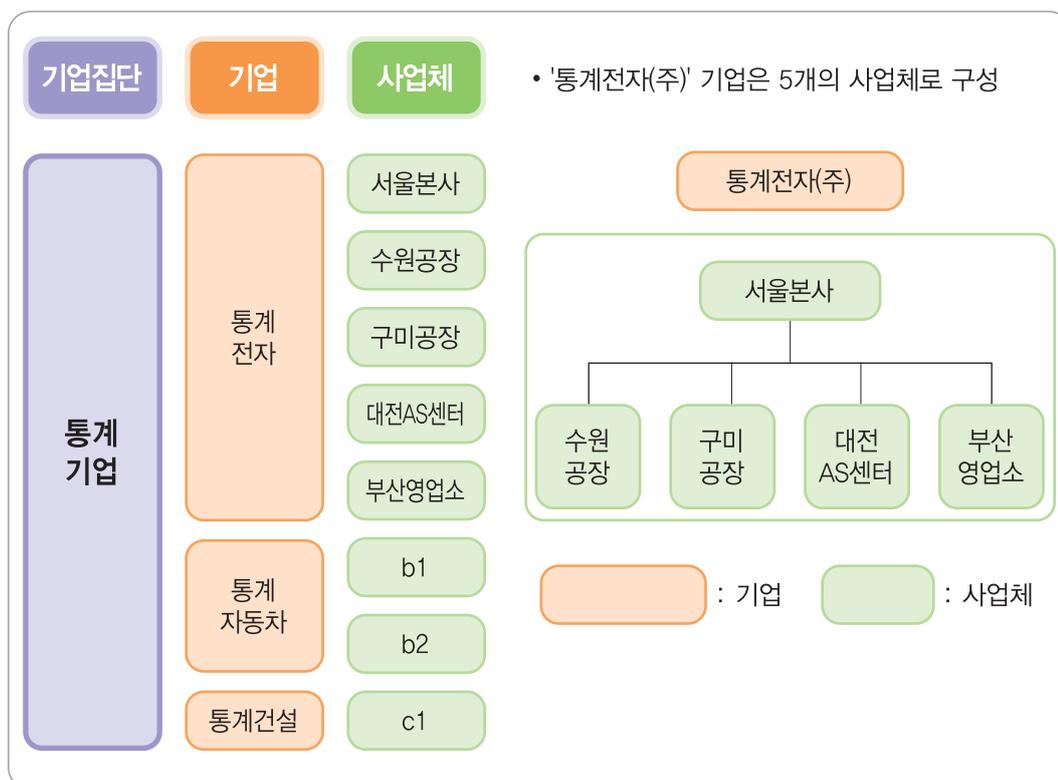
기업집단(Enterprise group)은 동일한 통제하에 법·재무적 관계로 결합된 법인기업들이 형성하는 집단입니다. 기업통계등록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국내총생산(GDP)의 0.5%(10.4조)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 등록번호와 1:N으로 연계됩니다.

기업(Enterprise)은 재무 및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제도 단위로, 법인등록번호 또는 본점사업자등록번호 1개당 1개의 기업을 구축합니다.

4.2. 법·행정단위와 사업체

사업체(Establishment)는 기업을 산업활동과 장소로 구분하는 최소단위로, 사업자등록 번호와는 N:1로 연계됩니다. 즉, 특정 기업에 속한 n개 사업체가 1개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통계등록부는 기준연도에 1일 이상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과세사업자의 종된사업장 일련번호별로 각각 1개의 개별 사업체를 작성합니다.

기업집단, 기업 및 사업체 구분 예시



기업통계등록부는 기업을 그룹핑하는 기준에 따라 ① 대표자 기준, ②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의 2가지 자료를 제공합니다.

법인기업은 1개의 법인이 다수의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도 1개의 기업으로 처리하는 반면, 개인기업은 기업을 그룹핑하는 기준에 따라 기업 수 등이 달라지므로, 이용자의 사용 목적에 맞게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자료별 기업 그룹핑 방법〉

제공자료	기업 그룹핑 방법	
	법인기업	개인기업
대표자 기준	1개의 법인이 N개의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도 1개의 기업으로 처리 예) 1개의 법인이 3개의 사업자등록시 기업 1개, 사업체 3개	대표자의 개인대체번호 단위로 기업을 구분 예) 1명의 개인이 3개의 사업자등록시 기업 1개, 사업체 3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예) 1개의 법인이 3개의 사업자등록시 기업 1개, 사업체 3개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기업을 구분 예) 1명의 개인이 3개의 사업자등록시 기업 3개, 사업체 3개
상기 두 자료간 유의점	법인기업의 기업 수, 기업 매출액, 기업 종사자 항목 동일함	개인기업의 기업 수, 기업 매출액, 기업 종사자 항목 상이함
	제공자료별(2가지) 기업 수는 다르지만, 총 사업체 수는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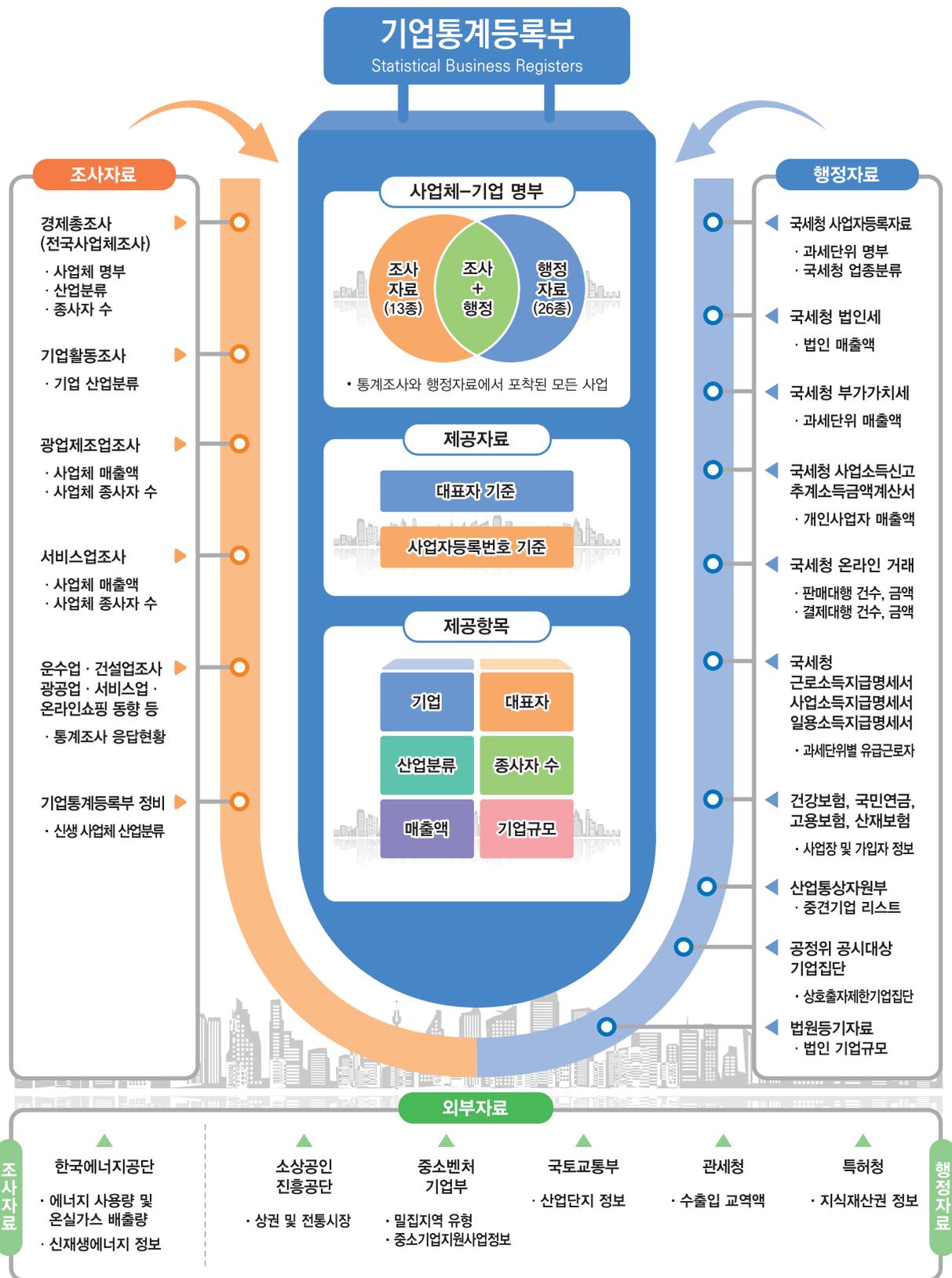
기업통계등록부는 기업집단, 기업 및 사업체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공항목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별, 주소, 종사자 수, 매출액, 산업분류 등입니다.

〈주요 제공항목〉

구분	기업집단	기업	사업체
기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별, 출생년도, 통계목적고유번호) • 주소(시도·시군구·행정구역코드·법정동코드) • 등록일자·개업일자·폐업일자·폐업사유 		
특성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여 - 상용/임시·일용 • 매출액 • 소속 기업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여 - 상용/임시·일용 • 매출액(소분류 단위) • 산업분류(소분류, 3자리) • 기업규모(상출기업, 기타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여 - 상용/임시·일용 • 매출액(세세분류 단위) • 산업분류(세세분류, 5자리)
기타 정보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판매대행/결제대행 건수 및 금액 •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 신재생에너지 특수산업분류별 영위여부, 종사자 수, 매출액, 투자액 • 공간정보(x, y좌표, 격자정보) • 상권정보 및 전통시장 정보 • 산업단지 공간정보 • 기업별 수출입 연간 총 교역액 • 지식재산권 정보 •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 • 기업 건강보험 보수 총금액 • 기업 외국인 종사자 수(성별×상용·임시일용) 		

※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는 비식별화하여 제공

<참고> 기업통계등록부 체계도





SBR 항목 이해하기

SBR 항목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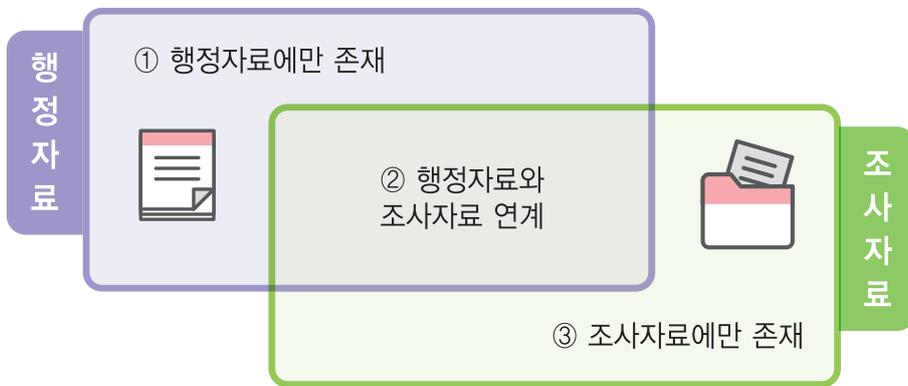
※ 명부 및 개별항목에 대한 설명자료는 '연간 SBR' 기준으로 제공

1

명부

명부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자료, 법인세 등 행정자료와 전국사업체조사 등 조사자료를 연계하여 작성합니다.

기업통계등록부 명부



- ① (행정자료에만 존재) 현장에서 조사되지 않았으나 행정자료로 존재가 확인된 사업자(체)
- ② (연계) 현장조사된 사업체가 행정자료로 확인되어 1:1로 연계된 사업체
- ③ (조사자료에만 존재) 현장에서 조사는 되었으나 행정자료에 존재하지 않는 사업체

● 통합된 명부는 먼저 '기업' 단위로 묶어서 분류합니다.

- (법인기업)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기업 구분
- (개인기업)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기준으로 기업 구분

● 다음으로, 그룹핑*된 기업정보를 활용하여, 기업 내 사업체 단위의 매출액 및 종사자 등을 작성합니다.

* 기업 그룹핑 방법: ① 대표자 기준, ②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구분	기본항목
기업(사업체)	기준연도, 기업명(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등
대표자	대표자 성별, 출생년도 등
주소	행정구역분류코드, 시도, 시군구명 등
조직	조직구분, 조직형태, 공공기관 유형 등
개업 및 폐업	등록일자, 개업일자, 폐업일자, 폐업사유 등
산업분류, 종사자 수 등	산업분류, 종사자 수, 매출액, 활동구분, 기업규모 등

작성대상

- 당해년도 12월 기준 가동사업체와 해당년도에 폐업한 사업체를 포함
- (가동사업체) 해당년도 12월 기준으로 작성
 - (폐업사업체) 해당년도에 폐업한 모든 사업체

대표자

사업자등록 자료상의 출생년도, 성별 정보 활용

- 등록된 각 항목의 값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환* 처리
- * (예1) 출생년도가 '1800' 이거나, 기준연도 보다 미래 시점인 경우 출생년도 '9999', 생년월일 '99999999' 로 입력
- * (예2) 종친회 등과 같은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정보가 종친회명 등으로 입수될 경우, 출생년도, 생년월일, 성별이 변환처리 될 수 있음

주소

사업자등록자료에 기재된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를 활용하여 행정구역분류코드 작성

조직구분

1.개인, 2.법인

- 사업자등록번호를 구성하는 10자리 중 4, 5번째(2자리) 숫자가 '01~79, 90~99, 89, 80'이면 '개인', '81~88'이면 '법인'
- ※ 법인등록자료를 반영하여 일부 수정·보완

조직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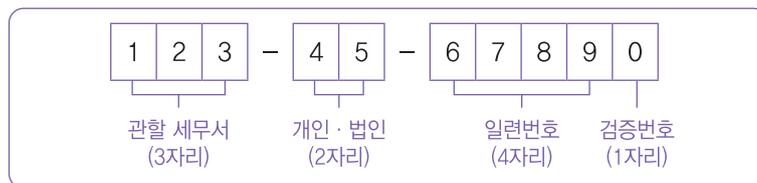
법인등록번호 5, 6번째 자리 및 사업자등록번호 4, 5번째 자리로 구분

조직형태	종류	구분코드	설명
①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01~79	개인과세사업자
		90~99	개인면세사업자
② 회사법인	법인등록번호	11~15	주식회사, 합명회사 등 상법법인
		81~86	주식회사, 합명회사 등 외국법인
	사업자등록번호	81,86~88	단독, 영리법인 본사(점), 본부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85	영리법인의 지점
③ 회사이외법인	법인등록번호	21~22	사단, 재단 등 민법법인
		31~51, 71	학교법인, 조합 등 특수법인
	사업자등록번호	82	비영리법인의 본·지점
④ 비법인단체	사업자등록번호	80, 89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모임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자등록번호	8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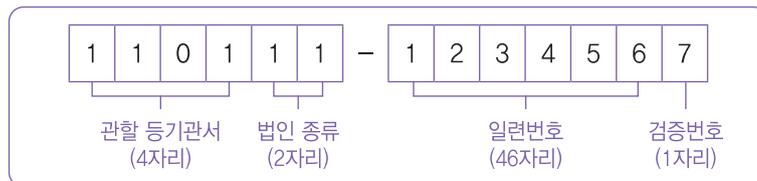
※ 어린이집이 비법인단체(80)로 되어있더라도 개인이 운영할 경우 '개인사업체'로 구분
 ※ 점술집 등이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89)로 되어 있더라도 개인이 운영할 경우 '개인사업체'로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체계**

• 사업자등록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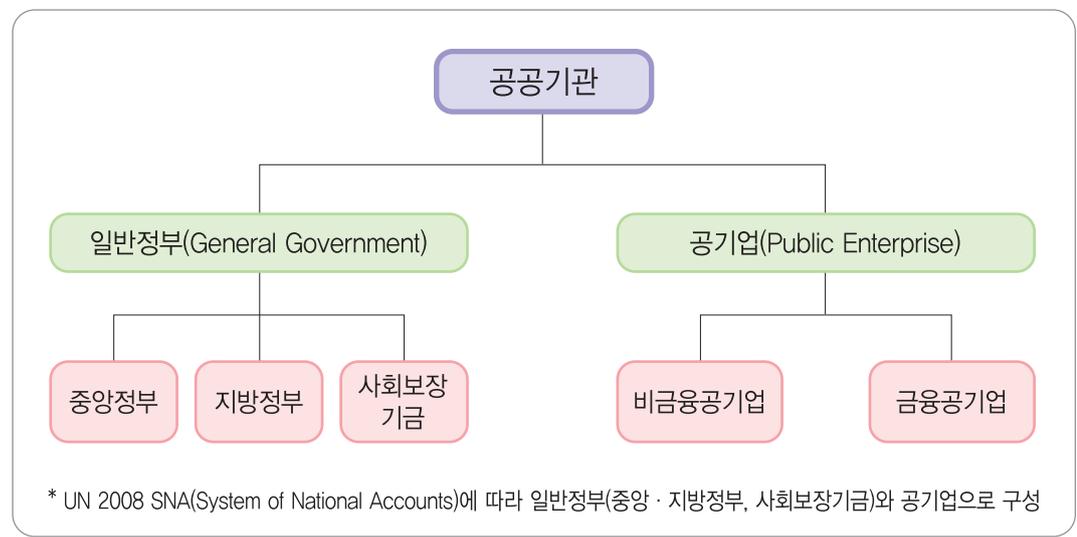
• 법인등록번호



※ SDC 분석용 자료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는 비식별화하여 제공(12자리)
 - 사업자등록번호 : A(1자리) + 사업자등록번호 4,5번째(2자리) + 일련번호(9자리)
 - 법인등록번호 : B(1자리) + 법인등록번호 5,6번째(2자리) + 일련번호(9자리)

공공기관 유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선정



* UN 2008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일반정부(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으로 구성

〈공공기관 유형에 대한 설명 및 예시〉

공공기관 유형	설명	예시
① 중앙정부기관	부·처·청 등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의 지배를 받는 공공비영리단체로 구성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② 중앙정부비영리단체		도로교통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③ 지방정부기관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지배를 받는 공공비영리단체로 구성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④ 지방정부비영리단체		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 교통공사, 복지재단, 문화재단 등
⑤ 사회보장기금	정부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⑥ 공기업비금융공기업중앙	정부의 지배(주로 정부 소유)를 받으면서 시장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단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교병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⑦ 공기업비금융공기업지방		서울디자인재단, 세종문화회관, 동대문문화재단, 서울관광재단 등
⑧ 공기업금융공기업중앙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등록일자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 사업자단위 과세적용 사업체는 '적용일자'를 기준으로 함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체의 적용일자인?

- 국세청은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관리의 편리함을 위하여 대표자가 '사업자 등록번호 N개'를 '1개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사업자단위 과세')를 두고 있다. 이 경우 본점 1개를 지정하고 나머지 사업체는 '일련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 날짜가 '적용일자' 이다

개업일자

대표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입한 '개업일'

폐업일자

대표자가 휴·폐업 신고서에 기입한 '폐업일'

폐업사유코드

신고자가 '폐업사유 범주' 내에서 선택하며, 범주별로 코드화하여 제공

폐업사유 범주

- | | |
|-----------------|--------------------------|
| ① 사업부진(폐업) | ⑪ 구등록폐지 |
| ② 행정처분(폐업) | ⑫ 사업자단위과세 포기로 인한 폐쇄 |
| ③ 계절사유(폐업) | ⑬ 사업자단위과세(중사업장)자로 전환폐업 |
| ④ 법인전환(폐업) | ⑭ 세법개정에 의한 면세전환 |
| ⑤ 면세포기(폐업) | ⑮ 세법에 의해 면세에서 과세로전환관련 폐지 |
| ⑥ 면세적용(폐업) | ⑯ 제적에 의한 폐업 |
| ⑦ 법인해산(합병) | ⑰ 중사업장 폐쇄 |
| ⑧ 양도·양수(폐업) | ⑱ 사업포괄양도(폐업) |
| ⑨ 기타(폐업) | ⑲ 연락사무소 고유번호 개편으로인한 직권폐업 |
| ⑩ 과세경업에 의한 면세폐업 | ⑳ 미상 |

※ '23년 기준 자료부터 코드화하여 제공하며, 소급하여 적용

폐업 신고일자

대표자가 폐업을 신청한 날



주의사항

기업통계등록부는 등록일과 폐업일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체와 폐업사업체를 구축함
등록일과 폐업일은 대표자가 신고시 기입한 개업날짜 또는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한 날짜와는 다를 수 있음

산업분류

사업체와 기업의 산업분류는 조사자료의 산업분류 및 행정자료의 업종코드를 활용(자동연계 시스템)하여 작성하였으며, 2015년 이전 자료는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

– 사업체는 세세분류(5자리), 기업은 소분류(3자리) 단위까지 산업분류 코드를 부여

* '22년~'23년 기준 자료는 10차 및 11차 산업분류 동시 제공

종사자 수 (단위: 명)

종사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자료와 국세청의 소득지급명세서 등으로 파악이 가능한 해당연도 12월 기준의 유급 종사자를 의미, 다만, 종사자 작성시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제외되며, 종사자 수는 '상용근로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로 구분하여 작성

– 근무일수 365일 → 상용근로자

– 근무일수 365일 미만 → 임시 및 일용근로자

* 종사자 수 구축에 활용하고 있던 행정자료 8종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 자료'의 신고 제도 폐지('23.7월)에 따라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자료'를 추가 활용하여 종사자 수 구축('23년 기준 자료부터 반영)

매출액 (단위: 백만원)

매출액은 법인세, 사업소득신고(복식, 간편), 부가가치세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 단위로 작성

– 법인기업 매출액 : 법인세 '손익일반 매출액'과 '손익금융 영업수익'으로 작성

– 개인기업 매출액 : 사업소득신고(복식기장, 간편장부) 등을 활용하여 작성

– 기업 3개년 평균 매출액 : 개업일자를 기준으로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의 매출액 평균이며, 중간에 폐업되었다더라도 신고된 매출액을 적용하여 작성

① 사업자등록자료에 '개업일자'가 있는 경우

- 해당연도 포함 개업일자가 36개월 이상 ▶ 해당연도 포함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 해당연도 포함 개업일자가 24개월~36개월 미만 ▶ 해당연도 포함 직전 2개년 매출액 평균
- 해당연도 포함 개업일자가 24개월 미만 ▶ 해당연도 매출액

② 사업자등록자료에 '개업일자'가 없는 경우

- 직전년 매출액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연도 매출액을 포함하여 평균을 작성
- 모두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매출액만 적용

※ 기업의 산업분류(대, 중, 소분류)별 매출액 산정 방법

기업의 산업분류별 매출액은 해당 기업의 산업분류(대, 중, 소분류)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임

👉 기업의 산업분류별 매출액 예시

통계전자(주) 기업의 대표 산업분류는 'C 제조업'이며 이와 동일한 기업내 사업체 산업 대분류의 매출액은 70%, 동일 사업체 산업 중분류(26)는 60%, 산업 소분류(261)는 30%임

사업체명	BR_GI	기업 총 매출액	산업 대분류		산업 중분류		산업 소분류	
			대분류	매출액합	중분류	매출액합	소분류	매출액합
통계전자(주)	1	100억	C	70억	26	60억	261	30억

1) 대분류 'C'에 대한 매출액 합

사업체명	사업체 매출액	산업 대분류
대분류 'C' 합계	70억	C
통계전자 서울 본사	15억	M
통계전자 수원 공장	30억	C
통계전자 구미 공장	30억	C
통계전자 대전 공장	10억	C
통계전자 부산 영업소	15억	N

2) 중분류 '26'에 대한 매출액 합

사업체명	사업체 매출액	산업 대분류	산업 중분류
중분류 '26' 합계	60억	C	26***
통계전자 서울 본부		M	71***
통계전자 수원 공장	30억	C	26***
통계전자 구미 공장	30억	C	26***
통계전자 대전 공장		C	27***
통계전자 부산 영업소		N	74***

3) 소분류 '261'에 대한 매출액 합

사업체명	사업체 매출액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소분류 '261' 합계	30억	C	261**
통계전자 서울 본사		M	715**
통계전자 수원 공장	30억	C	261**
통계전자 구미 공장		C	262**
통계전자 대전 공장		C	272**
통계전자 부산 영업소		N	741**

활동구분 매출액, 종사자 존재 여부에 따라 사업체 및 기업 활동 상태를 구분

▶ (코드 유형) 1. 활동, 2. 비활동, 3. 폐업

- 활동 : 사업체 매출액 또는 종사자 수가 존재하는 경우
- 비활동 : 매출액과 종사자 수가 공란(null)이거나, '0'인 경우
- 폐업 : 폐업 여부가 'Y'라고 표시된 경우

기업규모

기업규모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분류합니다.



기업규모 관련 법안

- 대기업(상출기업)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공정거래위원회)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중소벤처기업부)

▶ (코드 유형)

- 1 : 상출기업, 2 : 기타대기업, 3 : 중견기업, 4 : 중기업, 5 : 소기업, 6 : 소상공인, 91 : 기업규모 판정 제외 사업자

1 (대기업) 상출기업(1)과 기타대기업(2)으로 구성

- 상출기업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5월 고시) 지정하는 기업집단 중 국내총생산(GDP)의 0.5%(10.4조) 이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기타대기업 : 기업집단 중 상출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 공기업 및 일부 영리 공공기관, 금융보험업(일반지주회사 제외) 기업, 자산이 10.4조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중견기업 독립성 기준) 등으로 구성

2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며, 대기업(상출기업)도 아닌 기업(3)

- 중견기업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보다 크거나, 자산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규모 기준) 및 중견기업의 피출자기업이거나, 관계기업과 합산한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독립성 기준)

3 (중소기업) 중기업(4)과 소기업(5), 소상공인(6)으로 구성

- 중기업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가 중소기업이면서, 소기업 규모보다 큰 기업
- 소기업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가 소기업인 기업으로 소상공인은 미포함
- 소상공인 : 소기업 중에서 종사자 수가 10명 또는 5명 미만이면서, 업종별 종사자 수 등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4 (기업규모 제외) 기업규모 판정 제외 사업자(91)

- 산업대분류가 공란(null), 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O), 가구내고용활동(T), 국제·외국기관(U), 비영리기업

조사사업체고유번호 기업통계등록부와 조사자료(전사체 등) 연계를 위한 사업체 고유Key

SBR사업체고유번호 연간 자료간 또는 연간과 분기, 월간 자료간 연계를 위한 사업체 고유Key

SBR기업고유번호 시계열 분석을 위한 연도별 연계 및 연간, 분기, 월간 자료간 연계를 위한 기업 고유Key

	개선 전		개선 후
	연간	분기	연간, 분기, 월간
자리 수	10자리	11자리	11자리
작성 방식	행정 사업체고유번호 + 조사 사업체고유번호	행정 사업체고유번호	행정 사업체고유번호
시계열 연계	연도별 연계 가능 분기 SBR과 연계 불가능	연도 변경 시 연계 불가능 연간 SBR과 연계 불가능	연간, 분기, 월간 자료의 연도별 연계 가능 연간, 분기, 월간 자료간 연계 가능
(예시)	A사업체의 고유번호 (2019) 3119123456 (2020) 3119123456	A사업체의 고유번호 (‘19.4Q) 81191234567 (‘20.4Q) 81201234567	A사업체의 SBR 고유번호 (‘19.12M, ‘19.4Q, 2019년) 81191234567 (‘20.12M, ‘20.4Q, 2020년) 81191234567

기업 자료 분석시 참고사항

- (기업 구분, RPRS_BZENT_YN) 기업 본점을 구분하기 위해 기업 구분키를 부여합니다. 기업 구분 값이 “Y” (RPRS_BZENT_YN = “Y”)이면 기업 본점에 해당
- (기업내 사업체 수, BZENT_CNT) 동일 기업 내 사업체가 몇 개인지를 의미

법인기업 '사업체 구분' 작성 방법

- 전국사업체조사의 사업체 구분 (1: 단독사업체, 2: 본사/본점, 3: 지사/지점)
- SBR의 구분 방법
BZENT_CNT(기업 내 사업체 수) = '1' AND RPRS_BZENT_YN = "Y" : 단독사업체
BZENT_CNT(기업 내 사업체 수) > '2' AND RPRS_BZENT_YN = "Y" : 다사업체 중 본사/본점
BZENT_CNT(기업 내 사업체 수) > '2' AND RPRS_BZENT_YN가 NULL : 다사업체 중 지사/지점

기후변화 관련 항목(한국에너지공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통계등록부 항목 확대

①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실태조사」

- (제공항목) 에너지원별(6종)*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 12개 항목

* 석탄류, 석유류, 도시가스, 기타연료, 전력, 열에너지

- 에너지사용량(toe) : 사업체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에너지를 모두 포함
-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 : 사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 작성기관의 자료제공일 변경으로 '22년 기준 자료부터 6월 서비스 예정

②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

- (제공항목) 특수산업분류별(4종)* 영위여부, 종사자 수, 매출액, 투자액 : 16개 항목

* 제조업, 건설업, 공급업, 서비스업

※ 조사결과를 SBR과 연계한 자료로, 기증값을 반영한 실태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공간정보 관련 항목(통계청 좌표정보 등)

통계정보와 지리정보를 결합하여 다양한 공간분석을 위한 관련 항목 제공

- (제공기관) 통계청(좌표정보, 격자정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권, 전통시장), 국토교통부(산업단지)
- (제공항목) 좌표정보(x, y좌표), 격자정보(1km), 상권정보(상권명, 면적), 전통시장정보(시장명, 시장면적), 산업단지정보(산업단지명, 면적, 구분코드*)

*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 제공되는 좌표정보는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의 지오코딩** API를 이용하여 생성되었으며, 지오코딩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공간정보(상권, 전통시장, 산업단지)도 제공되는 좌표와 입수한 경계자료를 공간연산한 결과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음

** 지오코딩(Geocoding)은 고유명칭(주소, 산, 호수의 이름 등)을 가지고 위도와 경도의 좌표값을 얻는 것을 말함

- 산업단지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하여 입수한 공간정보의 산업단지 단위(상·하위)의 경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통계와 수치가 다를 수 있음

무역정보 관련 항목(관세청)

경제활동 분석을 위한 무역데이터 서비스 요구에 따른 항목 제공

- (제공항목) 연간 수입 및 수출교역 총액
 - 관세청의 기업별 수입 및 수출교역 총액을 16개 구간값으로 제공

지식재산권 관련 항목(특허청)

산업분야에 활용되는 무형의 재화인 지적재산 통계의 개발·분석을 위한 항목 제공

- (제공항목)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 건수
 - 특허청 KIPRIS^{Plus}의 기준년도 12월 31일 기준 Open API 벌크 파일을 받아 집계한 후 연계한 자료이므로, 집계방식에 따라 제공되는 데이터와 다를 수 있음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중기부)

중소기업 지원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항목 제공

- (제공항목)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문별(8개)* 지원금액
 - 중기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SIMS)내 중소기업 지원사업정보와 SBR을 연계한 자료(집행액 기준)로,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 금융부문, 기술부문, 인력부문, 수출부문, 내수부문, 창업부문, 경영부문, 기타부문

건강보험 보수총금액(건강보험관리공단)

기업별 임금구조 변화 등 기업의 고용형태 분석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제공항목) 건강보험 보수총금액
 - 보수총액 정의: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보수의 총액(예) 육아휴직 급여, 식대, 자가운전비, 국외근로소득 등 비과세 항목 제외
 - 보수총액 신고: 직전년도 12.31 기준 직장가입자 자격인 모든 근로자, 필수신고
 - 신고기간 / 통계청 입수: 매년 3월, 10월 / 익익월말

외국인 종사자 수(4대 보험 등)

기업의 외국인 고용분석 및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통계작성 모집단 등 자료 제공

- (제공항목) 성별×종사상 지위별 7개 항목
 - 외국인등록 신고 기준으로 작성, 이중국적일 경우 외국인으로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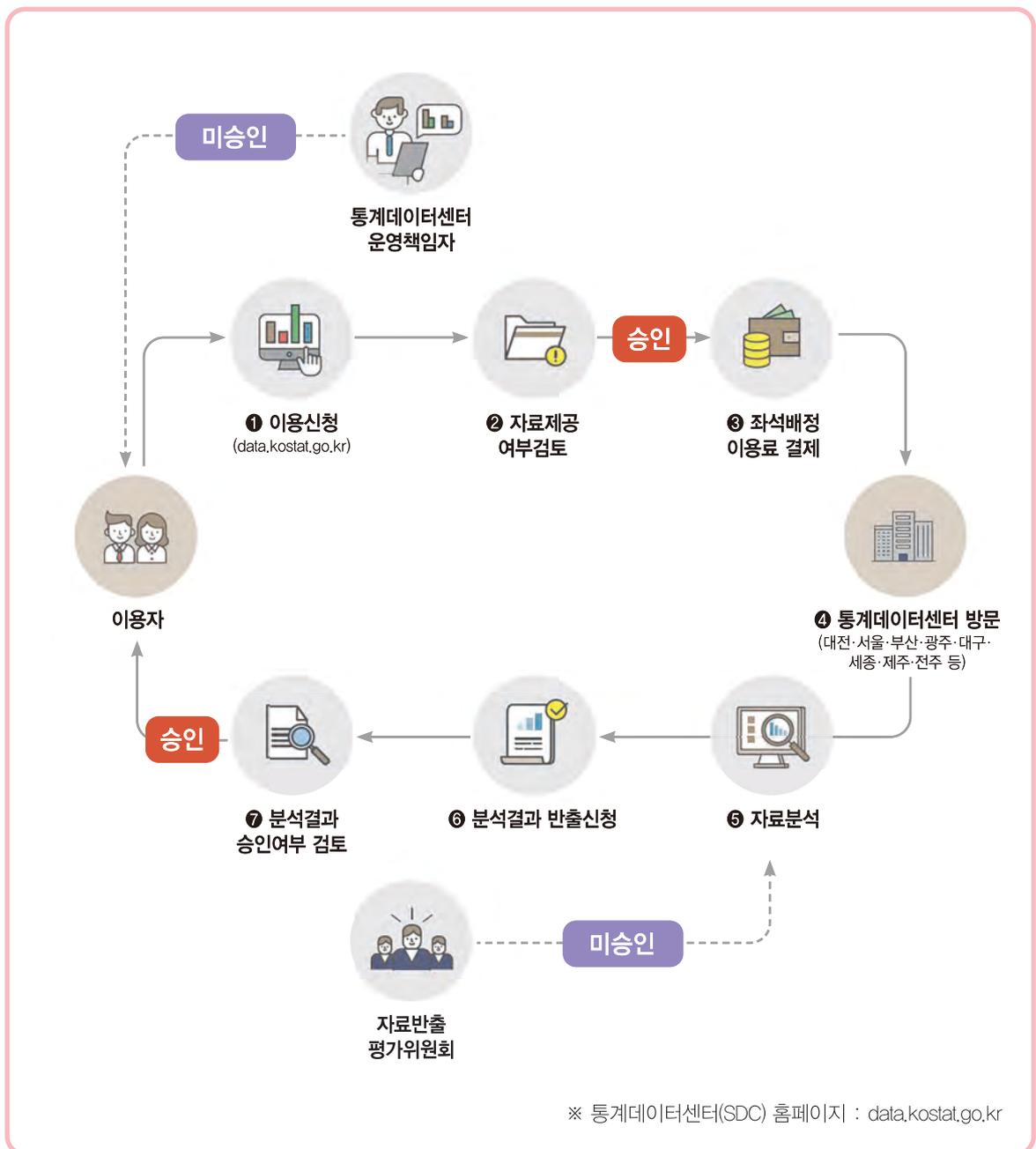
SBR 이용하기



SBR 이용하기

1 이용절차

통계데이터센터(SDC) 이용절차



기업통계등록부는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센터에서 기업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정보 보호를 위해 집계표 형태로만 반출 가능합니다. 또한, 통계작성기관이 **국가승인통계 작성 목적**으로 조사명부를 요청할 경우, 사업체명, 소재지 등 명부자료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외부제공 항목 이용목적(명부 추출용, 데이터분석용)에 따라 제공항목 다름

	연간 기업통계등록부	분기, 월간 기업통계등록부
조사 명부용	122개 항목 제공 기업(사업체) 기본항목 - 대표자명, 주소, 조직형태 등 산업분류(세세분류, 5자리) - 기업 산업분류는 소분류(3자리) 기업(사업체) 종사자 기업(사업체) 매출액 기업규모 기업 3개년 평균매출액 SBR기업(사업체) 고유번호 등	분기 : 64개, 월간 : 60개 항목 제공 기업(사업체) 기본항목 - 대표자명, 주소, 조직형태 등 산업분류(세세분류, 5자리) - 기업 산업분류는 소분류(3자리) 기업 종사자 기업 매출액(최근 연간 SBR 매출액) SBR기업(사업체) 고유번호 등
데이터 분석용	135개 항목 제공 기업(사업체) 기본항목 - 사업체명, 전화번호, 상세주소 정보 제외 산업분류(세세분류, 5자리) - 기업 산업분류는 소분류(3자리) 기업(사업체) 종사자 기업(사업체) 매출액 기업규모 기업 3개년 평균매출액 에너지원별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신재생에너지 관련 항목 산업단지(단지명, 면적) 수출입교역액 지식재산권 보유건수 항목 중소기업지원사업 외국인 종사자 항목 건강보험 보수 총금액 항목 등	분기 : 51개, 월간 : 43개 항목 제공 기업(사업체) 기본항목 - 사업체명, 전화번호, 상세주소 정보 제외 산업분류(세세분류, 5자리) - 기업 산업분류는 소분류(3자리) 기업 종사자 기업 매출액(최근 연간 SBR 매출액) 등

명부반출 가능 항목 국가승인통계 또는 승인 중인 통계 대상

- 사업체명, 소재지, 개업일자, 폐업일자, 조직형태, 기업대표 여부, 산업분류(세세분류), 종사자 수 (구간화값), 매출액(구간화값), 전화번호
- 표본의 3배수 제공(예비표본 포함)

- 작성 기준

- (연간) 기준연도 12월 자료로, 연 1회 구축 및 제공합니다.
 - 기준연도 내 폐업 신고한 사업체 및 신규 등록한 사업체 모두 포함
- (분기) 기준연도 3, 6, 9, 12월 자료로, 연 4회 구축 및 제공합니다.
 - 기준연도 내 폐업 신고한 사업체 모두 포함
- (월간) 기준월 자료로, 연 12회 구축 및 제공합니다.
 - 기준연도 내 폐업 신고한 사업체는 모두 포함하되, 종사자 수는 최근 분기 자료를 사용함



분기 및 월간 SBR

- (기업 종사자) 관련 행정자료 입수 시기로 인해 분기별 종사자로 작성
- (기업 매출액) 관련 행정자료는 연 1회, 연간 실적으로 입수되어 분기별 매출액 작성은 어려우며, 표본설계 등 참고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으로 작성
 - ※ 행정자료로만 구축되기 때문에 기업 단위로만 작성

▶ 분기 매출액 예시

기준연도	2024년				2025년			
	1	2	3	4	1	2	3	4
기준분기								
기업 매출액 (전년도)	23년 행정	23년 행정	23년 행정	23년 SBR (조사+행정)	24년 행정	24년 행정	24년 행정	24년 SBR (조사+행정)

- 산업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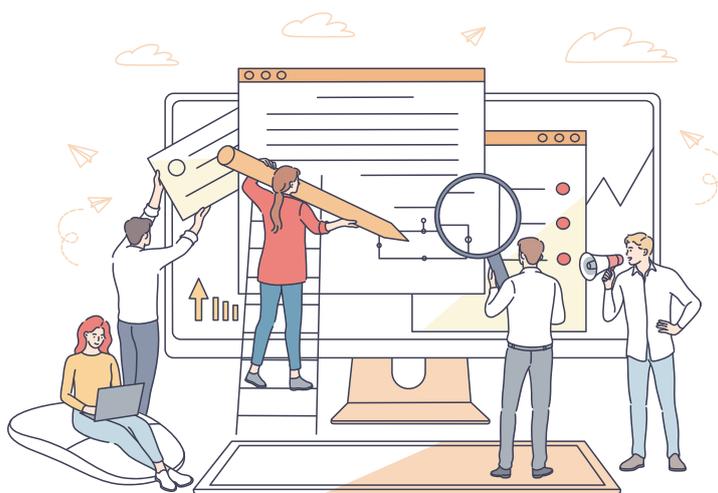
- (결정 원칙) 복합적인 산업활동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액)이 큰 산업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결정합니다.
- (적용 원칙) 복합적인 활동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소·세·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합니다.(Top_down 방식)
- (제공 범위) 사업체 산업분류는 세세분류(5자리), 기업 산업분류는 소분류(3자리)로 제공합니다.
 - ※ 기업 단위는 기업 내 부가가치 창출원의 다각화로 특정 산업활동으로 분류하기에 한계가 존재하여, 통계청 내 기업 단위 경제통계는 소분류(3자리)까지만 공표
- 행정자료의 산업분류는 국세청 업종코드를 활용하여 산업분류로 변환하며, 1개 업종에 다수의 산업분류가 연계될 경우 대표 자리까지만 변환하여 세세분류이지만 5자리가 아닌 경우도 존재합니다.

- 항목별 공란(null)
 - 입수된 원 행정자료 상 공란(null)으로 인해 자료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공란(null)

- (분기 및 월간) 행정자료만으로 구축되어 사업자등록번호 공란(null)이 없음
- (연간)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결합하여 구축, 조사자료에 포함된 무등록 사업체로 인해 사업자등록번호 공란(null)이 존재



기업통계등록부는 관련 자료 간 연계의 핵심 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통계 생산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① 모집단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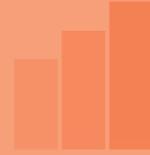
- (중기부) 「기업단위 중소기업 기본통계」 첫 발표 ('19.11., 보도자료)
 - 중소기업등록부는 통계청과 협업해 기업단위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새롭게 작성,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 그 동안 사업체 통계에서 제외됐던 기업까지 포함하여 작성
- (산업부) 「중견기업 기본통계」 모집단을 기업통계등록부로 변경 ('21.12., 보도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와 통계청 간 협업으로 이원화되어있던 중견기업 통계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 구축

② 통계 개선

- (통계청) 경제총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의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도 포괄
 - 기업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기존의 물리적 장소가 있는 사업체 뿐만 아니라, 가구내 전자상거래 등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모집단 확대
- (농식품부) 농업법인조사 조사대상 '실질 운영중인 농업법인'으로 포괄범위 개선
 - 휴·폐업이 잦은 농업법인 특수성을 고려, 기존 등록된 농업법인에서 SBR을 활용하여 '법인세 신고 자료가 있는 활동법인'으로 조사대상 포괄범위 명확화

③ 신규통계 개발

- (경기도) 코로나 회복지원을 위해 통계청과 「영세자영업자 경영현황」 개발 추진 ('21.5.13., 보도자료)
 - 경기도는 통계청과 협업해 영세자영업 경영활동 현황, 생존율 현황, 매출액 현황 등 통계를 개발하여 영세자영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
- (부산) 부산시,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수립..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통계」 개발 추진 ('22.3.11., 보도자료)
 - 부산시는 통계청과 협력해 부산의 모든 소상공인 기업(사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소상공인 기본현황 및 창·폐업, 연간 생존율 등 정책지표를 제공하는 '부산시 소상공인통계'를 개발
- (인천) 인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 개발 추진 ('23.12.27., 보도자료)
 - 인천시는 통계청과 협력해 인천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소상공인 기본현황, 창·폐업률, 생활밀접업종 현황 등 정책지표를 제공하는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를 개발



부록



1

기업통계등록부 레이아웃 (항목명 표준화 전·후 연계)

연간	분기 / 월간	항목명		한글항목명	명부추출		센터 분석	
		변경 전(구)	변경 후(신)		연간 (122개)	분기 (64개) / 월간 (60개)	연간 (135개)	분기 (51개) / 월간 (43개)
1	1	BASE_YEAR	CRTR_YR	기준연도	○	○	○	○
-	2	BASE_QU	QU_SE_CD/CRTR_MM	분기구분코드/기준월	-	○	-	○
2	3	BIZRNO	BRNO	사업자등록번호/SDC 제공용으로 비식별처리	○	○	○	○
3	4	JURIRNO_1	CRNO	법인등록번호/SDC 제공용으로 비식별처리	○	○	○	○
4	-	ESTM_NTE_NUM	EECNS_ESCN	전사체및경총사업체고유번호	○	-	○	-
5	5	BR_JOJIK	OGNZ_SE_CD	조직구분코드	○	○	○	○
6	6	ORG_FORM_CD	OGNZ_SHAPE_CD	조직형태코드 1:개인사업체 2:회사법인 3:회사이외법인 4:비법인단체 5:국가지방자치단체	○	○	○	○
7	-	GOV_PBL_CD	PBLOGR_TYPE_SE_CD	공공기관유형코드 1:중앙정부기관 2:중앙정부비영리단체 3:지방정부기관 4:지방정부비영리단체 5:사회보장기금 6:공기업비금융공기업중앙 7:공기업비금융공기업지방 8:공기업금융공기업중앙	○	-	○	-
8	7	BIZ_NM	BZENT_NM	사업체명	○	○	X	X
9	-	SURV_BIZ_NM	EECNS_BZENT_NM	전사체및경총사업체명	○	-	X	-
10	8	BPLC_TEL_NO	BZENT_TELNO	사업체전화번호	○	○	X	X
11	-	SURV_BPLC_TEL_NO	EECNS_BZENT_TELNO	전사체및경총사업체전화번호 (사업체및총조사)	○	-	X	-
-	9		EECNS_BZENT_TELNO	전사체및경총사업체전화번호(SBR 정비 추가항목)	-	○	-	X
12	10	SRTY_DSMT_NUM	SPIDN	통계목적고유번호	○	○	△ (연계키)	△ (연계키)
13	11	RPRSNTV_NM	RPRSV_NM	대표자성명	X	X	△ (연계키)	△ (연계키)
14	12	RPRSNTV_SEXDSTN	RPRSV_SD_CD	대표자성별코드(1:남자, 2:여자)	○	○	○	○
15	13	YBTH	RPRSV_BRTH_YR	대표자출생연도	○	○	○	○
16	14	YBTH_MD	RPRSV_BRDT	대표자생년월일	X	X	△ (연계키)	△ (연계키)

연간	분기 / 월간	항목명		한글항목명	명부추출		센터 분석	
		변경 전(구)	변경 후(신)		연간 (122개)	분기 (64개) / 월간 (60개)	연간 (135개)	분기 (51개) / 월간 (43개)
17	15	REGIST_DE	REG_YMD	등록일자	○	○	○	○
18	16	OPBIZ_DE	OPBIZ_YMD	개업일자	○	○	○	○
19	17	CLSB_DE	CLSBIZ_YMD	폐업일자	○	○	○	○
20	18	CLSB_YN	CLSBIZ_YN	폐업여부	○	○	○	○
21	19		CLSBIZ_RSN_SE_CD	폐업사유구분코드 (01: 사업부진(폐업), 02: 행정처분(폐업), 03: 계절사유(폐업), 04: 법인전환(폐업), 05: 면세포기(폐업), 06: 면세적용(폐업), 07: 법인해산(합병), 08: 양도·양수(폐업), 09: 기타(폐업), 10: 과세검업에 의한 면세폐업, 11: 구등록폐지, 12: 사업자단위 과세 포기로 인한 폐쇄, 13: 사업자단위 과세(종사업장)자로 전환폐업, 14: 세법개정에 의한 면세전환, 15: 세법에 의해 면세에서 과세로전환관련 폐지, 16: 제적에 의한 폐업, 17: 종사업장 폐쇄, 18: 사업포괄양도(폐업), 19: 연락사무소 고유번호 개편으로인한 직권폐업, 99: 미상)	○	○	○	○
22	20	CLSB_PROC_DE	CLSBIZ_DCLR_YMD	폐업신고일자	○	○	○	○
23	21	CP_CD	ADCLSF_CTPV_CD	행정구역분류 시도코드	○	○	○	○
24	22	CDW_CD	ADCLSF_SGG_CD	행정구역분류시군구코드 (기준연도 2022년 이전: 개정 전, 기준연도 2023년 이후: 개정 후)	○	○	○	○
25	23	ZONE_CD	ADMDST_CLSF_CD	행정구역분류코드 (기준연도 2022년 이전: 개정 전, 기준연도 2023년 이후: 개정 후)	○	○	○	○
26	24	CP_NM	CTPV_NM	시도명	○	○	○	○
27	25	CDW_NM	SGG_NM	시군구명	○	○	○	○
28	26	TTM_NM	EMD_NM	읍면동명	○	○	×	×
29	27	GA_VILL	STLJ_NM	법정리명	○	○	×	×
30	28	REGAL_DONG_CODE	STDG_CD	법정동코드	○	○	○	○
31	29	MNTN_HSNB	MTN_SE_CD	산구분코드(0: 대지, 1: 산)	○	○	×	×
32	30	PTDE_HSNB	MNO	본번	○	○	×	×
33	31	RGST_HSNB	SNO	부번	○	○	×	×
34	32	TONG	TONG	통	○	○	×	×
35	33	BAN	BAN	반	○	○	×	×
36	34	ROD_NM	ROAD_NM	도로명	○	○	×	×
37	35	ROD_NM_CD	ROAD_NM_CD	도로명코드	○	○	×	×
38	36	UGRND_FLR_DIV	UDGD_SE_CD	지하구분코드(0: 지상, 1: 지하, 2: 공중)	○	○	×	×
39	37	BUDI_PTDE_HSNB	BMNO	건물본번	○	○	×	×

연간	분기 / 월간	항목명		한글항목명	명부추출		센터 분석	
		변경 전(구)	변경 후(신)		연간 (122개)	분기 (64개) / 월간 (60개)	연간 (135개)	분기 (51개) / 월간 (43개)
40	38	BUDI_RGST_HSNB	BSNO	건물부번	○	○	×	×
41	39	BUDI_NM	BLDG_NM	건물명	○	○	×	×
42	40	BUDI_BLD_NM	BDG_NM	건물동명	○	○	×	×
43	41	BUDI_FLR_NM	BLDG_FLR_NM	건물층명	○	○	×	×
44	42	BUDI_DR_NM	BLH_NM	건물호명	○	○	×	×
45	43	BR_NTE_NUM	SBR_ESCN	기업통계등록부사업체고유번호	○	○	○	○
46	-	BR_ACT	BZENT_ACTY_STTS_SE_CD	사업체활동상태구분코드 (1: 활동, 2: 비활동, 3: 폐업)	○	-	○	-
47	-	BR_AMTC	BZENT_SLS_AMT	사업체매출금액	○	-	○	-
48	-	BR_EMP_MF_T	BZENT_WKER_CNT	사업체종사자수	○	-	○	-
49	-	BR_EMP_T	BZENT_RGEMP_CNT	사업체상용근로자수	○	-	○	-
50	-	BR_EMP_M	BZENT_MAN_RGEMP_CNT	사업체남자상용근로자수	○	-	○	-
51	-	BR_EMP_F	BZENT_WMAN_RGEMP_CNT	사업체여자상용근로자수	○	-	○	-
52	-	BR_IMSI_T	BZENT_TDWRKR_CNT	사업체임시일용근로자수	○	-	○	-
53	-	BR_IMSI_M	BZENT_MAN_TDWRKR_CNT	사업체남자임시일용근로자수	○	-	○	-
54	-	BR_IMSI_F	BZENT_WMAN_TDWRKR_CNT	사업체여자임시일용근로자수	○	-	○	-
55	44	BR_SANUP	BZENT_KSIC_LVL1_CD	사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1레벨코드(대분류)	○	○	○	○
56	45	BR_SNB_CD	BZENT_KSIC_LVL5_CD	사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5레벨코드(세세분류)	○	○	○	○
57	46	BR_SANUP_11	BZENT_KSDR11_LVL1_CD	사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11차1레벨코드(대분류)	○	○	○	○
58	47	BR_SNB_CD_11	BZENT_KSDR11_LVL5_CD	사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11차5레벨코드(세세분류)	○	○	○	○
59	48	GI_CNT	BZENT_CNT	사업체수	○	○	○	○
60	49	BR_GI	RPRS_BZENT_YN	대표사업체여부(Y:예)	○	○	○	○
61	50	BR_GI_KEY	SBR_BZCN	기업통계등록부기업고유번호	○	○	○	○
62	-	BR_GI_ACT	ENT_ACTY_STTS_SE_CD	기업활동상태구분코드 (1: 활동, 2: 비활동, 3: 폐업)	○	-	○	-
63	51	BR_GI_SUMAMT	ENT_SLS_AMT	기업매출금액	○	○	○	○
64	52	BR_GI_EMP_MF_T	ENT_WKER_CNT	기업종사자수	○	○	○	○
65	53	BR_GI_EMP_T	ENT_RGEMP_CNT	기업상용근로자수	○	○	○	○
66	54	BR_GI_EMP_M	ENT_MAN_RGEMP_CNT	기업남자상용근로자수	○	○	○	○
67	55	BR_GI_EMP_F	ENT_WMAN_RGEMP_CNT	기업여자상용근로자수	○	○	○	○
68	56	BR_GI_IMSI_T	ENT_TDWRKR_CNT	기업임시일용근로자수	○	○	○	○
69	57	BR_GI_IMSI_M	ENT_MAN_TDWRKR_CNT	기업남자임시일용근로자수	○	○	○	○
70	58	BR_GI_IMSI_F	ENT_WMAN_TDWRKR_CNT	기업여자임시일용근로자수	○	○	○	○

연간	분기 / 월간	항목명		한글항목명	명부추출		센터 분석	
		변경 전(구)	변경 후(신)		연간 (122개)	분기 (64개) / 월간 (60개)	연간 (135개)	분기 (51개) / 월간 (43개)
71	-	-	ENT_FRGNR_WKER_CNT	기업외국인종사자수	0	-	0	-
72	-	-	ENT_FRGNR_RGEMP_CNT	기업외국인상용근로자수	0	-	0	-
73	-	-	ENT_MAN_FRGNR_RGEMP_CNT	기업남자외국인상용근로자수	0	-	0	-
74	-	-	ENT_WMAN_FRGNR_RGEMP_CNT	기업여자외국인상용근로자수	0	-	0	-
75	-	-	ENT_FRGNR_TDWRKR_CNT	기업외국인임시일용근로자수	0	-	0	-
76	-	-	ENT_MAN_FRGNR_TDWRKR_CNT	기업남자외국인임시일용근로자수	0	-	0	-
77	-	-	ENT_WMAN_FRGNR_TDWRKR_CNT	기업여자외국인임시일용근로자수	0	-	0	-
78	-	-	ENT_HLJR_RMNRTN_GRAMT	기업건강보험보수총금액	0	-	0	-
79	59	BR_GI_LCLS_CD	ENT_KSIC_LVL1_CD	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1레벨코드(대분류)	0	0	0	0
80	-	BR_GI_LCLS_CD_SUMAMT	ENT_KSIC_LVL1_SLS_AMT	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1레벨매출금액	0	-	0	-
81	60	BR_GI_MCLS_CD	ENT_KSIC_LVL2_CD	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2레벨코드(중분류)	0	0	0	0
82	-	BR_GI_MCLS_CD_SUMAMT	ENT_KSIC_LVL2_SLS_AMT	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2레벨매출금액	0	-	0	-
83	61	BR_GI_SCLS_CD	ENT_KSIC_LVL3_CD	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3레벨코드(소분류)	0	0	0	0
84	-	BR_GI_SCLS_CD_SUMAMT	ENT_KSIC_LVL3_SLS_AMT	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3레벨매출금액	0	-	0	-
85	-	GIUP_SIZE_CD	ENT_SCL_SE_CD	기업규모구분코드 (1: 상출기업, 2: 기타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기업, 5: 소기업, 6: 소상공인 91: 기업규모판정제외사업자)	0	-	0	-
86	-	ESALE_AMT_AVG	ENT_YR3_AVG_SLS_AMT	기업3년평균매출금액(기준연도 포함)	0	-	0	-
87	-	ETPR_GROP_NM	BIZGRP_NM	기업집단명	0	-	0	-
88	-	ETPR_GROP_FNC_YN	BIZGRP_FNBZ_YN	기업집단공용업여부(Y: 예, N: 아니오)	0	-	0	-
89	-	CRT_ADMIN_DATA_DIV	SBR_DATA_SE_CD	기업통계등록부자료구분코드 (K: 사업자등록, B: 부가세, V: 법인세, S: 조사자료)	0	-	0	-
90	-	DIV_CD	DATA_MACH_SE_CD	자료매칭구분코드 (M: 매칭, R: 재매칭, H: 행정, S: 조사, MH: 기업단위잔존행정, MS: 기업단위잔존조사)	0	-	0	-
91	62	BIGO	DATA_OVHL_RMRK	자료정비비고	0	0	0	0
92	63	SELL_AGC_CNT	ONLINE_SLSA_RQST_NOCS	온라인판매대행의뢰건수	X	X	0	0
93	64	SELL_AGC_AMTB	ONLINE_SLSA_RQST_AMT	온라인판매대행의뢰금액	X	X	0	0
94	65	STTL_REQ_CNT	ONLINE_STLA_RQST_NOCS	온라인결제대행의뢰건수	X	X	0	0
95	66	STTL_REQ_AMTB	ONLINE_STLA_RQST_AMT	온라인결제대행의뢰금액	X	X	0	0
96	-	ERG_COAL	COAL_ERG_USAGE	석탄에너지사용량(toe)	X	-	0	-
97	-	ERG_OIL	PTRM_ERG_USAGE	석유에너지사용량(toe)	X	-	0	-
98	-	ERG_GAS	GAS_ERG_USAGE	가스에너지사용량(toe)	X	-	0	-

연간	분기 / 월간	항목명		한글항목명	명부추출		센터 분석	
		변경 전(구)	변경 후(신)		연간 (122개)	분기 (64개) / 월간 (60개)	연간 (135개)	분기 (51개) / 월간 (43개)
99	-	ERG_ETC_FUEL	FUEL_ERG_USAGE	기타연료에너지사용량(ton)	X	-	O	-
100	-	ERG_HEAT	TMERG_ERG_USAGE	열에너지에너지사용량(ton)	X	-	O	-
101	-	ERG_ELCT	ELPR_ERG_USAGE	전력에너지사용량(ton)	X	-	O	-
102	-	GHUS_GAS_COAL	COAL_GHGS_DSCQ	석탄온실가스배출량(tCO2eq.)	X	-	O	-
103	-	GHUS_GAS_OIL	PTRM_GHGS_DSCQ	석유온실가스배출량(tCO2eq.)	X	-	O	-
104	-	GHUS_GAS_GAS	GAS_GHGS_DSCQ	가스온실가스배출량(tCO2eq.)	X	-	O	-
105	-	GHUS_GAS_ETC_FUEL	FUEL_GHGS_DSCQ	기타연료온실가스배출량(tCO2eq.)	X	-	O	-
106	-	GHUS_GAS_HEAT	TMERG_GHGS_DSCQ	열에너지온실가스배출량(tCO2eq.)	X	-	O	-
107	-	GHUS_GAS_ELCT	ELPR_GHGS_DSCQ	전력온실가스배출량(tCO2eq.)	X	-	O	-
-	67	COGE_AREA_TYPE_CD_1	TH1_CNCNT_RGN_TYPE_CD	1번째밀집지역유형코드 (11: 산업단지_국가산업단지, 12: 산업단지_농공단지, 13: 산업단지_도시첨단산업단지, 14: 산업단지_일반산업단지, 20: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30: 벤처기업집적시설, 40: 신기술창업집적지역, 50: 지식산업센터, 60: 지역특화발전특구)	-	O	-	O
-	68	COGE_AREA_NM_1	TH1_CNCNT_RGN_NM	1번째밀집지역명	-	O	-	O
-	69	COGE_AREA_TYPE_CD_2	TH2_CNCNT_RGN_TYPE_CD	2번째밀집지역유형코드	-	O	-	O
-	70	COGE_AREA_NM_2	TH2_CNCNT_RGN_NM	2번째밀집지역명	-	O	-	O
108	-	NR_ERG_C_YN	REERG_MFTR_LEAD_YN	신재생에너지제조업영위여부	X	-	O	-
109	-	NR_ERG_C_EMP_T	REERG_MFTR_WKER_CNT	신재생에너지제조업종사자수	X	-	O	-
110	-	NR_ERG_C_SALE_AMT	REERG_MFTR_SLS_AMT	신재생에너지제조업매출금액	X	-	O	-
111	-	NR_ERG_C_INVST_AMT	REERG_MFTR_IVSM_AMT	신재생에너지제조업투자금액	X	-	O	-
112	-	NR_ERG_F_YN	REERG_CNST_LEAD_YN	신재생에너지건설업영위여부	X	-	O	-
113	-	NR_ERG_F_EMP_T	REERG_CNST_WKER_CNT	신재생에너지건설업종사자수	X	-	O	-
114	-	NR_ERG_F_SALE_AMT	REERG_CNST_SLS_AMT	신재생에너지건설업매출금액	X	-	O	-
115	-	NR_ERG_F_INVST_AMT	REERG_CNST_IVSM_AMT	신재생에너지건설업투자금액	X	-	O	-
116	-	NR_ERG_D_YN	REERG_SPINDS_LEAD_YN	신재생에너지공급업영위여부	X	-	O	-
117	-	NR_ERG_D_EMP_T	REERG_SPINDS_WKER_CNT	신재생에너지공급업종사자수	X	-	O	-
118	-	NR_ERG_D_SALE_AMT	REERG_SPINDS_SLS_AMT	신재생에너지공급업매출금액	X	-	O	-
119	-	NR_ERG_D_INVST_AMT	REERG_SPINDS_IVSM_AMT	신재생에너지공급업투자금액	X	-	O	-
120	-	NR_ERG_M_YN	REERG_SVINDS_LEAD_YN	신재생에너지서비스업영위여부	X	-	O	-
121	-	NR_ERG_M_EMP_T	REERG_SVINDS_WKER_CNT	신재생에너지서비스업종사자수	X	-	O	-
122	-	NR_ERG_M_SALE_AMT	REERG_SVINDS_SLS_AMT	신재생에너지서비스업매출금액	X	-	O	-
123	-	NR_ERG_M_INVST_AMT	REERG_SVINDS_IVSM_AMT	신재생에너지서비스업투자금액	X	-	O	-

연간	분기 / 월간	항목명		한글항목명	명부추출		센터 분석	
		변경 전(구)	변경 후(신)		연간 (122개)	분기 (64개) / 월간 (60개)	연간 (135개)	분기 (51개) / 월간 (43개)
124	-	X_PST	XAXIS_CRDNT	X축좌표(GIS)	0	-	0	-
125	-	Y_PST	YAXIS_CRDNT	Y축좌표(GIS)	0	-	0	-
126	-	GRID_1K	GRID_INFO	그리드정보(GIS)_격자(1KM)	0	-	0	-
127	-	TRAD_AREA_NM	TDAR_NM	상권명	0	-	0	-
128	-	TRAD_AREA_SIP	TDAR_AREA	상권면적(단위: m²)	0	-	0	-
129	-	MARKET_NM	TMKT_NM	전통시장명	0	-	0	-
130	-	MARKET_SIP	TMKT_AREA	전통시장면적(단위: m²)	0	-	0	-
131	-	INDUSTRIAL_COMPLEX_NM	INDCMP_NM	산업단지명	0	-	0	-
132	-	INDUSTRIAL_COMPLEX_SIP	INDCMP_AREA	산업단지면적(단위: m²)	0	-	0	-
133	-	INDUSTRIAL_COMPLEX_DIV	INDCMP_SE_CD	산업단지구분(1: 국가, 2: 일반, 3: 도시첨단, 4: 농공)	0	-	0	-
134	-	IAMTR_SCTN_CD	IAMTR_SCTN_CD	수입교역역구간코드	X	-	0	-
135	-	EAMTR_SCTN_CD	EAMTR_SCTN_CD	수출교역역구간코드	X	-	0	-
136	-	PTRG_NOCS	PTRG_NOCS	특허등록건수	0	-	0	-
137	-	UMRG_NOCS	UMRG_NOCS	실용신안등록건수	0	-	0	-
138	-	DSRG_NOCS	DSRG_NOCS	디자인등록건수	0	-	0	-
139	-	TRRG_NOCS	TRRG_NOCS	상표등록건수	0	-	0	-
140	-		ENT_GVMT_SPAM_SUM	기업정부지원금액합계	0	-	0	-
141	-		ENT_CAO_SPAM_SUM	기업중앙부처지원금액합계	0	-	0	-
142	-		ENT_LAENTY_SPAM_SUM	기업지방자치단체지원금액합계	0	-	0	-
143	-		ENT_CAO_FNSP_AMT	기업중앙부처금융지원금액	0	-	0	-
144	-		ENT_CAO_TCSP_AMT	기업중앙부처기술지원금액	0	-	0	-
145	-		ENT_CAO_MPSP_AMT	기업중앙부처인력지원금액	0	-	0	-
146	-		ENT_CAO_EXSP_AMT	기업중앙부처수출지원금액	0	-	0	-
147	-		ENT_CAO_DMSP_AMT	기업중앙부처내수지원금액	0	-	0	-
148	-		ENT_CAO_FDSP_AMT	기업중앙부처창업지원금액	0	-	0	-
149	-		ENT_CAO_MNSP_AMT	기업중앙부처경영지원금액	0	-	0	-
150	-		ENT_CAO_ETSP_AMT	기업중앙부처기타지원금액	0	-	0	-
151	-		ENT_LAENTY_FNSP_AMT	기업지방자치단체금융지원금액	0	-	0	-
152	-		ENT_LAENTY_TCSP_AMT	기업지방자치단체기술지원금액	0	-	0	-
153	-		ENT_LAENTY_MPSP_AMT	기업지방자치단체인력지원금액	0	-	0	-
154	-		ENT_LAENTY_EXSP_AMT	기업지방자치단체수출지원금액	0	-	0	-
155	-		ENT_LAENTY_DMSP_AMT	기업지방자치단체내수지원금액	0	-	0	-

연 간	분기 / 월간	항목명		한글항목명	명부추출		센터 분석	
		변경 전(구)	변경 후(신)		연간 (122개)	분기 (64개) /월간 (60개)	연간 (135개)	분기 (51개) /월간 (43개)
156	-		ENT_LAENTY_FDSP_AMT	기업지방자치단체창업지원금액	0	-	0	-
157	-		ENT_LAENTY_MNSP_AMT	기업지방자치단체경영지원금액	0	-	0	-
158	-		ENT_LAENTY_ETSP_AMT	기업지방자치단체기타지원금액	0	-	0	-

※ 사용 기호표 및 유의사항

O : 제공, X : 미제공, △ : 센터 내 연계 서비스용 연계키로만 활용 가능, 이용자 제공은 불가, - : 항목부재

 : 해당 자료는 분기단위 입수로 연간 및 분기 SBR에만 제공되고, 월간 SBR에는 제공되지 않음

 : 해당 자료는 신규 추가제공 항목임

-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는 센터 분석(SDC)시 비식별화하여 제공(이용자 반입자료도 동일)

※ 수·출입교역액 항목은 대표자 기준(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자료 미제공) 자료만 제공합니다.

※ 표준화된 항목명의 적용 시기는 '24년 하반기(적용시 별도 공지할 예정)로, 원활한 분석을 위해서는 '항목명 구·신 연계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행정자료명	구분		구축항목
		연간	분기/월간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	○	○	사업체, 기업 기본사항
	법인세 자료	○	○	기업 매출액
	부가가치세 자료	○	○	
	사업소득신고(복식기장, 간편장부)	○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	기업 종사자 수 외국인 종사자 수 건강보험 보수 총금액
	온라인 판매대행 및 결제대행 자료	○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4대보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
일용근로내역확인서		○	○	
건강보험자료_사업장 및 가입자		○	○	
국민연금자료_사업장 및 가입자		○	○	
고용·산재보험자료_피보험자 및 상실자		○	○	
통계청	산재보험_근로자_고용신고	○	○	
	전국사업체조사(또는 경제총조사)	○		조사-행정 연계 매출액 및 종사자 배분 경제통계조사 응답현황표
	기업활동조사	○		
	광업제조업조사	○		
	서비스업조사	○		경제통계조사 응답현황표
	건설업조사	○		
	운수업조사	○		
	프렌차이즈조사	○		
	광공업동향조사	○		
	서비스업동향조사	○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결과	○	○	산업분류, 주소 등 보완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리스트	○		기업규모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 기업집단 리스트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배출 실태조사	○		에너지 분야 항목
	신재생에너지산업 실태조사	○		특수산업분류, 종사자 수, 매출액, 투자액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밀집지역		○	밀집지역 유형 및 명칭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문별 지원금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및 상권 정보	○		전통시장 및 상권 명칭, 면적
국토부	산업단지 공간정보	○		산업단지명, 산업단지 면적, 산업단지 구분코드
특허청	지식재산권 정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보유 수
관세청	기업별 수출입 연간 총 교역액	○		수입액 및 수출액 구간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과	기업 및 사업체의 공간정보	○		좌표정보, 격자정보

관련 정의

● 통계법 제3조(정의)

3의2. “통계등록부”란 통계청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분야별 모집단의 기본정보를 수록하여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등록부”란 통계청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분야별 모집단의 기본정보를 수록하여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2.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로서 통계등록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로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통계데이터센터(SDC: Statistics Data Center)”란 통계청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안시설을 갖추고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특정 장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및 그 장소를 말한다.
5. “식별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다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와 구별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6. “관리부서”란 통계등록부의 구축·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제2조(정의)

2. “공표외 자료”란 공표자료 이외의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 가.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취득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입력오류, 조사 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통계기초자료(Microdata)
- 나. 대규모 전수조사 실시를 위하여 사전적으로 작성되는 가구 또는 사업체를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수록된 명부자료
- 다. 통계기초자료를 집계하여 만든 통계자료 중에서 대외에 공표되지 아니한 미공표 집계자료
- 마. 거처, 건물 등의 지리적인 정보를 공간적으로 전산화한 공간좌표정보

3. “행정통계자료”란 행정자료를 주 원천자료로 하여 암호화 과정, 정제, 연계 등 통계적 처리를 거쳐 생산한 자료를 말한다.

●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1. “행정통계자료”란 행정자료를 주 원천자료로 하여 암호화 과정, 정제, 연계 등 통계적 처리를 거쳐 생산한 자료를 말한다.
2. “통계기초자료(Microdata)”란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취득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자료를 말한다.
4. “비식별화”란 연계키로 사용되는 식별정보를 암호화하고 통계 작성용 통계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특정의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2조(정의)

10. “통계용 행정DB”란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자료의 오류 수정, 산업분류 및 행정 구역 코드 부여 등 통계적 처리를 거친 행정자료 DB를 말한다.

자료제공

● 통계법 제29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청장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공 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
- ③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통계등록부 자료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 ④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통계등록부 자료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로서 특정의 개인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절차·방법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자료제공 범위)
 - ① 관리책임자는 자료제공 범위의 결정 및 변경 시 영 제49조에 따른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② 관리책임자는 통계등록부 구축에 활용된 행정자료 등을 제공한 기관에서 사용목적, 내용·범위를 제한한 경우 협의된 사항을 따라야 한다.
-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6조(자료제공 방법)
 - ① 관리책임자는 영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하여 통계등록부를 제공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영 제4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거쳐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제공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
 2.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작성을 위해 다른 방법의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보호되는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영 제47조제4항에 따라 통계이용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제9조(자료 제공주체)
 - ② 공표외 자료는 통계작성기관 각 부서의 장 또는 통계책임관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계법」제37조제3항에 따라 통계청이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통계청내의 소관부서가 통합하여 제공한다.

자료이용

- 통계법 제31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 ① 통계등록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통계청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 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사업체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통계등록부에 수록된 정보
 - 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 다.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작성된 통계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 2. 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 ⑤ 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이용신청)

이용자는 영 제45조의3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명칭, 사용목적, 내용 및 범위, 이용기간, 제공방법, 보호방법 등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 및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한 신청을 포함)로 신청하여야 한다.
 -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통계등록부 등 행정통계자료 제공
 - 2. 민간자료(통계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단체 및 법인에서 작성·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공
 - 3. 인가된 통계기초자료(Microdata) 제공
 - 4.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반입 자료와 위 1호부터 3호까지의 자료와의 연계 지원
 - 5. 이용자 반입 자료의 분석 지원 및 이용자 반입 자료 간 연계 지원
 - 6. 센터 이용과 관련한 상담 및 자료 분석 지원, 주문형서비스의 제공
 - 7. 통계데이터 분석 교육 및 데이터 활용 관련 연구
 - 8. 서비스 자료의 품질관리 및 센터 내 자료의 비식별화 관리
 - 9. 그 밖에 홍보 등 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

-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분석결과의 반출)
 - ② 분석 결과는 집계표 형태로 반출하여야 하며, 식별정보가 포함되거나 재식별이 가능한 형태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집계표 외의 형태로 반출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의 표본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후 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의 표본
 3. 총조사 및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 또는 기업체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산업분류 정보
 4.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승인된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분석결과 등의 반출 신청이 있을 시 반출에 대한 승인여부는 자료반출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며,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반출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승인된 자료는 신청 시 작성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인용하거나 공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통계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12조(자료이용)
 - ① 행정자료 DB 및 개별파일 형태로 보관중인 개체식별자료는「통계법시행령」제3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용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목적으로 이용 시에는 자료제공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에 따른 자료제공 결정을 득한 후 이용할 수 있다.
 - ②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은 통계적 처리를 거친 통계용 행정DB 등에 구축된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④ 통계청 이외 기관 및 개인은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심의를 거친 통계자료를 통계데이터센터 내에서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할 수 있다.
 - ⑤ 통계 작성 및 공동 연구 등을 위해 통계청 외부로 통계자료를 반출하려는 자는 별표1의 자료반출 이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1> 중소기업의 범위와 중소기업자의 범위

※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 등”이라 한다)이 별표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 일 것

※ 중소기업자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참고2> 소상공인의 범위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범위)

-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 5명 미만

<참고3> 중소기업 분류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업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10명 미만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20억원 이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		120억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업		120억원 이하		
	가구 제조업		12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1,0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80억원 이하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80억원 이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120억원 이하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120억원 이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0억원 이하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0억원 이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0억원 이하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8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8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0억원 이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0억원 이하		
	기타 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0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5명 미만
	수도업		120억원 이하		5명 미만
	농업, 임업 및 어업		80억원 이하		5명 미만
	광업		80억원 이하		10명 미만
건설업	80억원 이하		10명 미만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5명 미만		
운수 및 창고업	80억원 이하		10명 미만		
정보통신업	80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명 미만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제외)		30억원 이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0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임대업제외)		3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1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이하				
금융·보험업	4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부동산업		30억원 이하			
임대업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자동차용 신문의자 제조업(C30393)은 별도기준(중소기업 : 매출액 1,500억원 이하)

4 행정구역분류코드

지역	행정코드	법정코드	국번
서울	11	11	02
부산	21	26	051
대구	22	27	053
인천	23	28	032
광주	24	29	062
대전	25	30	042
울산	26	31	052
세종	29	36	044
경기도	31	41	031
강원도	32	42	033
충청북도	33	43	043
충청남도	34	44	041
전라북도	35	45	063
전라남도	36	46	061
경상북도	37	47	054
경상남도	38	48	055
제주도	39	50	064

※ 한국행정구역분류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 전(7자리)·후(8자리) 코드를 병행 제공
 - 연간 자료는 '22년, 분기/월간 자료는 '23년 이후부터 제공



5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대분류	중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01	농업
	02	임업
	03	어업
B	광업	
05~08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6	금속 광업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C	제조업	
10~34	10	식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10~34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6~39	36	수도업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F	건설업	
41~42	41	종합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G	도매 및 소매업	
45~47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H	운수 및 창고업	
49~52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0	수상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대분류	중분류	
J	정보통신업	
58~63	58	출판업
	59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1	우편 및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64~66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	
68	68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6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8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85	85	교육 서비스업

대분류	중분류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86	보건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91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96	94	협회 및 단체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97~98	97	가구 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99	99	국제 및 외국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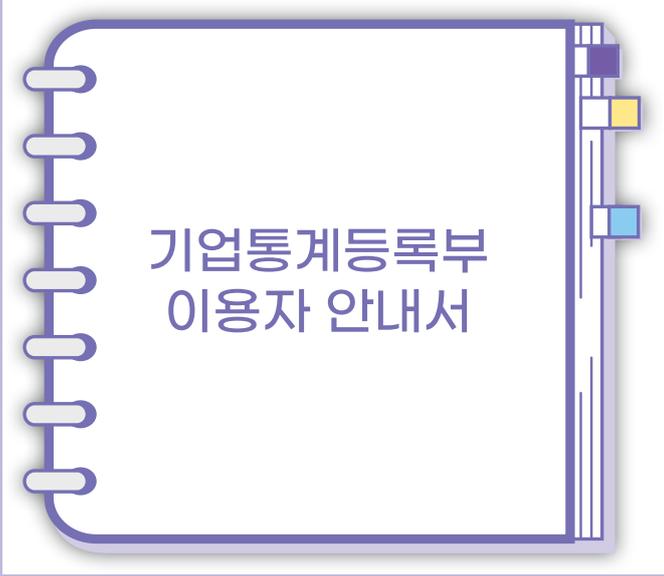
※ 제11차 개정사항

대분류	중분류	
J	정보통신업	
58~63	60	방송 및 영상 ·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64~66	65	보험업

- 사 업 체 : 해당 기준연도(분기) 내에 1일 이상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사업체
- 기 업 : 법인등록번호 또는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1개당 1개의 기업으로 정의
- 기 업 집 단 : 공정위에서 고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이 GDP의 0.5%이상)
- SBR사업체고유번호 : 사업체 단위의 고유키로, 시계열 및 분기와 연간 자료 간 분석 등을 위한 연계키
- 조사사업체고유번호 : '조사자료의 사업체 단위의 고유번호'로 조사자료와의 연계를 위한 연계키
- SBR기업고유번호 : 기업 단위의 고유키로, 시계열 및 자료 간 분석 등을 위한 연계키
* SBR기업고유번호가 동일한 사업체는 동일 기업 소속
- 개 인 사 업 체 : 개인이 소유·경영하는 사업체를 말하며,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포함
- 회 사 법 인 : 상법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 회 사 이 외 법 인 :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법인이 아닌 법인
- 비 법 인 단 체 :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하며 동창회,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법인이 아닌 교회 및 암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주민센터 등)
- 중 앙 정 부 기 관 : 부·처·청 등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의 지배를 받는 공공비영리단체로 구성
- 지 방 정 부 기 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지배를 받는 공공비영리단체로 구성
- 사 회 보 장 기 금 : 정부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국민건강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종 사 자 : 사업체(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피고용자로, 상용 및 임시·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근로·사업·일용 소득을 신고하는 근로자
- 상 용 근 로 자 :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 임시 및 일용근로자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자
- 상 출 기 업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업집단 중에서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공공기관 제외)에 속하는 대기업
- 기 타 대 기 업 : 중소기업 규모는 초과하지만 상출기업과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으로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및 일부 공공기관, 순수 금융·보험업, 자산 10.4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의 피출자기업 등으로 구성

- 중견기업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규모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산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가 중소기업이면서, 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 유예 및 경과조치 기관 중인 기업
- 소기업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가 중소기업이면서, 소기업 규모 이하인 기업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10명 또는 5명 미만이면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산업분류 : 사업체·기업이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코드
* 사업체 산업분류: 5자리(세세분류), 기업 산업분류: 3자리(소분류) 작성·제공
- 활동 : 사업체·기업의 매출액 또는 종사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활동으로 분류
- 비활동 : 사업체·기업의 매출액과 종사자가 모두 '0'이거나 없는 경우를 비활동으로 분류
- 등록일자 :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 개업일자 : 대표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입한 개업일
- 폐업일자 : 대표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입한 폐업일
- 외국인종사자 : 사업체(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 피고용자로, 상용 및 임시·일용근로자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근로·사업·일용 소득을 신고하는 근로자
- 건강보험보수총금액 :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보수의 총액
예) 육아휴직 급여, 식대, 자가운전비, 국외근로소득 등 비과세 항목 제외





기업통계등록부
이용자 안내서



통계청
Statistics Korea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http://kostat.go.kr>